

[별표 2] <개정 2008.5.9>

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(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5항관련)

1.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

가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×표시를 하여야 한다.

나.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.

2. 소각·매몰·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

가. 동물의 사체,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소각·매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나.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,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.